

(주)보령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CP 운영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3조 (CP의 필요성)	2
제4조 (CP 운영 원칙)	3
제5조 (CP 8대 요소의 이행)	3
제6조 (적용범위)	4

제2장 리더십과 의지의 천명

제7조 (자율준수 방침의 제정 및 선언)	6
제8조 (자율준수 의지의 표명)	6
제9조 (CP 문화의 촉진 및 참여)	6

제3장 CP에 관한 역할·책임·관련 기능 등

제10조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7
제11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7
제12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역할)	8
제13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소집 및 의결)	8
제14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8
제1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자격요건)	9
제1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9
제1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	10
제18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10
제19조 (자율준수 관리조직)	11
제20조 (자율준수 관리조직의 업무 및 역할)	11
제21조 (임직원의 의무)	12
제22조 (CP 활동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12

제4장 공정거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제23조 (인력과 예산의 지원)	12
-------------------	----

제24조 (CP 추진 계획의 수립)	13
제25조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과 의견수렴)	13
제26조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 이슈 식별)	14
제27조 (경쟁법 및 관련법령 의무사항 파악 및 결정)	14
제28조 (CP 관련 목표 및 추진계획의 수립)	15
제29조 (CP 관련 목표 달성 추진계획의 관리)	16
제30조 (목표에 관한 모니터링)	16
제31조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등)	16
제32조 (자율준수편람의 활용)	17
제33조 (교육훈련 기본방침)	18
제34조 (교육훈련 구분)	18
제35조 (교육훈련 관련 책임과 권한)	18
제36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19
제37조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필요성에 대한 판단)	19
제38조 (교육의 실시)	20
제39조 (특별 교육 및 집중교육)	20
제40조 (교육평가)	20
제41조 (교육훈련 상벌)	20
제42조 (교육훈련 기록관리)	21

제5장 내부감시체계

제43조 (범위반 행위의 감시)	21
제44조 (경쟁법 및 관련법령 Risk 평가)	22
제45조 (고유 Risk의 식별)	23
제46조 (고유 Risk 분석 및 원인 파악)	24
제47조 (고유 Risk 판정)	24
제48조 (Risk 관리)	25
제49조 (경감 또는 완화)	25
제50조 (Risk 이전 또는 분산)	25
제51조 (Risk 회피)	26
제52조 (Risk 허용도)	26
제53조 (통제수단의 효과성 평가)	26
제54조 (잔여 Risk 판정 및 관리)	27
제55조 (사전업무 협의)	27
제56조 (직접보고체계)	28

제57조 (내부제보)	28
제58조 (내부제보 절차)	29
제59조 (내부제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원보호)	29
제60조 (내부제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9

제6장 효과성 평가와 개선

제61조 (효과성 평가)	30
제62조 (효과성 평가 대상 및 고려사항)	31
제63조 (효과성 평가 방법 등)	31
제64조 (모니터링, 성과측정, 분석 및 평가)	32
제65조 (모니터링, 성과측정, 분석 및 평가의 책임과 권한)	32
제66조 (모니터링, 성과측정, 분석 및 평가 절차)	32
제67조 (경영검토)	33
제68조 (경영검토 내용)	33
제69조 (경영검토 의사결정)	34
제70조 (경영검토 기록의 활용 및 관리)	34

제7장 자율준수활동에 대한 포상 및 제재

제71조 (포상 등)	34
제72조 (제재 조치)	35
제73조 (제재의 절차)	35

제8장 기타

제74조 (문서관리 기본원칙)	35
제75조 (관리대상 문서)	36
제76조 (운영상황 공시)	36
제77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36
제78조 (관련 규정의 준용 및 위임)	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정거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하 “CP”라 한다) 운영규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Code of Conduct)이 제시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품토의 조성을 위하여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을 모두 포함(이하 임직원이라 한다)한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핵심요소와 실행지침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CP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경쟁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 및 개선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율준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표1> [용어 정의]

용어	정 의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Code of Conduct)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요소와 실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기준이 된다 (2001년 7월 5일 제정)
공정거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준수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쟁법 (공정거래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경쟁당국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방침의 승인과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관한 실행과 의지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이사회를 말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자율준수정책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과적 실행과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하여 임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의미하여 자율준수운영위원회를 말한다.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방침	최고경영자가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를 위한 의지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의 확립, 자율준수를 위한 임직원들의 책임과 역할, 경쟁법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한 원칙을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

용어	정 의
공정거래 행동강령	회사가 자율준수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행동기준을 의미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CP 운영규정)	자율준수 규범이 제시하는 핵심요소와 실행지침 등에 관한 실행 기준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경쟁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
내부통제제도	기업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입하는 기업 내부의 운영규칙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자율준수관리	내부통제제도에 의해 자율준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경영노력을 의미한다.
자율준수관리자	회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도록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자율준수담당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팀 내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소속의 자율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서별 자율준수 실천을 선도하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에 참석하여 CP관련 정책 및 모니터링 심의, 제재 및 포상 심의 등을 실시하도록 선임된 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자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 내부 및 외부의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하며, 임직원, 정부기관, 주주,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공급업체, 협력업체, 에이전트, 거래상대자, 경쟁기업, 지역사회 등 상호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조직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CP의 필요성)

CP를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게 될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적극적으로 준수활동을 실천 한다.

1.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의 사전 예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용 감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법원 소송 대응 관련 비용 및 시정조치 등에 따른 과징금 비용 등 최소화)
2.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 예방
3.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인센티브(우수 이상)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위원장 표창 등)
4. 타 준법지원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반부패경영시스템, 준법지원(감시)인, 정도경영, 윤리경영, 상생경영 등)
5. 임직원 경쟁법 및 관련법령 준수 의식의 내재화
6.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사업 추진시 회사의 이미지 제고 등

제4조 (CP 운영 원칙)

-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타 규정과 CP 운영규정이 상충될 때에는 CP 운영규정을 최상위 규정으로 정의하고 CP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 CP 운영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의한다.
- ② 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모든 임직원은 본 CP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학습 및 이해하고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본 CP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 ④ 본 CP 운영규정은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에서 정의하는 핵심 8대 요소 및 자율적 공정거래자율준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CP 8대 요소의 이행)

본 CP 운영규정은 <표2> CP 8대 요소(이하 “CP 8대 요소”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핵심 요소와 실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와 경영진, 모든 임직원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최고 경영진은 이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표2> [CP 8대 요소]

구분	핵심 요지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적격성과 독립성, 지위, 권한 등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구분	핵심 요지
7.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 한 사규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범위)

회사의 CP 운영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법규, 사업분야, 지리적분야, 인적분야 등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CP 운영규정에 적용되는 경쟁법 및 관련 법령 분야 적용범위는 <표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표3> [경쟁법 및 관련 법령 분야 적용 범위]

관련 법령	정의
공정거래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하도급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표시광고법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약사법	약사법이란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藥事)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의료법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공정경쟁규약	의약품 거래에 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제정하고 동조 제6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정을 말한다.
국제법 및 관할법	국제법 및 해외 사업활동 소재지 관할권의 경쟁관련 법률을 지칭한다.

②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CP 운영규정에 적용되는 사업분야 적용범위는 <표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표4>

[사업분야 적용범위]

사업장명	정 의
본사	거버넌스, 의약품 및 플랫폼 등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경영 및 사업 활동 분야
연구소	의약품의 R&D, 검사, 실험, 연구, 임상 등과 관련한 사업 활동분야
공장	의약품의 제조, 생산, 위탁개발 생산, 품질관리, 검품 등과 관련한 사업 활동분야
물류	의약품 등 바이오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한 사업 활동 분야
영업사무소	의약품, 플랫폼 기술, 바이오물류 등의 판촉, 영업, 판매, 수주 활동 등과 관련한 사업 활동분야

③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CP 운영규정에 적용되는 지리적 분야 적용범위는 <표5>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표5>

[지리적 분야 적용범위]

구분	정 의
국내	당사의 사업부문 소재지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국외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소재지 관할 국가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되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CP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④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CP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인적 분야 적용범위는 <표6>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표6>

[인적 분야 적용범위]

구분	정 의
임직원	이사회 구성인원, 최고경영자, 경영관리자, 일반관리자,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회사와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역할 및 책임, 법적 의무 등이 부과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해관계자	정부기관, 주주,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공급업체, 협력업체, 에이전트, 지역사회 등 상호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조직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리더십과 의지의 천명

제7조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방침의 제정 및 선언)

- ① 최고경영자는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한 자율준수의 기본원칙이 되는 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율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신념과 의지
 2. 공정한 시장경쟁이 회사에 가지는 의미
 3. 자율준수를 위한 임직원들의 책임과 역할
 4. 경쟁법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등
- ② 자율준수 방침의 제·개정은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 방침은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 즉시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 ④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방침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율준수 의지의 표명)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방침, 경쟁법 및 관련법령 자율준수에 관한 의지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의지표명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게재
2. 자율공시
3. 사내 인트라넷 게시
4. 메일링
5. 신년사
6. 지속가능보고서 게재
7. 뉴스레터, 사보 등 게재
8. 기타 의사소통 절차

제9조 (CP 문화의 촉진 및 참여)

- ① 최고경영자와 경영진들은 CP 문화 확산을 위하여 경쟁법 및 관련법령, CP 운영규정, 자율준수방침 등 회사 전체에 요구되는 행동과 행위의 공통 표준에 대해 적극적, 가시적, 일관적, 지속적 의지표명을 실증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와 경영진들은 CP 준수에 대한 의지표명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
 1. 사내 자율준수캠페인

2. 사내 공정거래의 날 또는 준법경영의 날 등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관련행사
3.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4.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외부 행사
5. 공정거래 자율준수 포럼(CP포럼)
6. 기타

제3장 CP에 관한 역할·책임·관련 기능 등

제10조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최고경영자는 CP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실행을 통해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실증하여야 한다.

1. 자율준수방침 및 CP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의 전략과 일관됨을 보장
2. CP 핵심 8대 요소의 회사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됨을 보장
3. CP 운영에 필요한 자원(인력, 예산, 기타)의 배정과 지원을 보장
4. 효과적인 자율준수 문화 형성의 중요성과 경쟁법 등에 대한 준수의 중요성을 전달
5. CP 운영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보장
6. CP의 효과성에 기여하도록 임직원들에게 지시 및 지원
7. 지속적 개선을 촉진하고 인식제고를 보장
8. 관리자들의 업무활동에 CP와 관련한 리더십을 실증하도록 역할을 지원.

②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1. 조직의 가치 수립 및 유지
2. C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 절차, 프로세스의 개발, 실행
3.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 사례를 포함하여 CP관련 문제에 대한 사항을 적시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 실행
4. CP 운영에 대한 의지 표명 유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5. CP 운영 책무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임직원들의 직무 내용에 포함
6.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또는 선임
7. 내부제보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실행
8. 기타 CP 관련 책임

제11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① 자율준수정책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과적 실행과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한 임직원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둔다.

②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위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판단하여 위촉한다. 단, 최고경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시킬 수 있다.

③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사전업무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

⑤ 자율준수 관리조직의 책임자는 간사로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

제12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역할)

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CP의 운영과 관련한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준수 방침 설정에 관한 사항

2. CP 추진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경쟁법 및 관련법령 의무사항 식별 및 Risk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CP 추진실적, 운영성과 등에 관한 효과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CP 운영현황 등에 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7.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한 사항

8. 계약, 거래, 약정 등 업무와 관련한 활동들에 대한 적법성 및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판단, 조언, 자문, 협의, 합의 등

9.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소집하며,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로 개최하여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심의의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그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한 위원들 명단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결정사항은 최고경영자에게 그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고경영자는 동 결정 사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운영,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설계, 임직원에 대한 인식의 고취, 자율준수 운영조직의 관리,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자율준수의 감독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 및 이해상충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중 적격성이 보장된 인원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이사결정기구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를 최고이사결정기구에서 선임의 의결한 경우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권한 등과 관련한 해당 내용을 제8조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지체 없이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최고경영자의 CP 운영에 대한 역할과 책임, 감독 등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최고경영자의 법적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질과 조건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2.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일상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의무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 보유)

3.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준수 의지 및 사명감

4. 자율준수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업무 종사

5. CP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 내 모든 부서와 업무에 대한 접근 가능

6. CP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사회 등 최고이사결정기구에 직접 보고하고 의견 및 자문을 제공하는 능력

7. 직원들에 의해 제기된 자율준수 관련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는 능력

8. CP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준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

② 회사는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자질과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 경영자로부터 CP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다음 각호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최고이사결정기구 및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접적 접근 권한

2.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한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 권한

4.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5.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 권한

6.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중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7.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운영 권한

8. 기타 최고이사결정기구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독립적이고 이해상충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책임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3. 주요 자율준수활동 및 사안에 대해 최고이사결정 기구 및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의무

제18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과 효율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설계, 구축, 계획수립, 실행 등의 운영 관리
2. CP관련 구체적인 목표의 수립 및 달성 관리
3.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과 관련한 의무사항의 식별 및 관리
4.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조정
5. 자율준수 의무 실행 관련 정책과 절차 수립 및 회사의 경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 및 건의
6.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무를 각 업무 일선의 관행과 절차에 반영
7.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배포
9.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한 성과지표 개발, 성과의 측정, 성과 관리
10.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운영 관리
11. 기타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효율적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위반행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한 위험(Risk) 평가 체계의 구축과 실행 관리
2.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최고 경영진 대한 직접 보고체계 마련 및 조치
3. CP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 CP 목표달성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한 효과성 평가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 보고와 개선 조치
5.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6.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
7. 자율준수 활동 등에 대한 기록관리
8.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와 지원
9. 기타 CP 운영과 관련된 자문 등 계약 관리·감독

제19조 (자율준수 관리조직)

- ① 최고이사결정기구와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CP에 관한 효율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CP 업무를 관리하는 자율준수 관리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CP 업무를 관리하는 자율준수 관리조직의 인원들은 적절한 경쟁법과 관련법령, 공정거래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③ CP 업무를 관리하는 자율준수 관리조직의 장은 부서장을 책임자로 한다.
- ④ 회사는 CP 업무를 관리하는 자율준수 관리조직의 담당 인원들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역량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자율준수 관리조직은 최고경영자 직속조직으로 둔다. 다만, 직제상 직속으로 관리조직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관리조직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CP활동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⑥ 자율준수 관리조직에는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담당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포함 시킬 수 있다.

제20조 (자율준수 관리조직의 업무 및 역할)

- ① 자율준수 관리조직의 업무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총괄하며, 자율준수담당자와 필요한 경우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를 두고 CP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보조
 2.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무 수행
 3. 경쟁법 및 관련법령 정보 수집 및 제공
 4.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의 작성,운영,관리
 5. CP 관련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6.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과 관련한 직원 교육,상담
 7. 경쟁법 및 관련법령 교육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8. 자율준수 모니터링, 내부감사, 내부심사 체계 구축, 실행, 관리
 9. 내부 제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10. 자율준수 운영 관련 문서 관리
 11.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 사전 심사하며 위반사항을 확인할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12.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및 평가 등 시행
 13. 상기 이행결과를 수시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출·보고
- ③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서업무와 관련하여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른 내부 규정의 정비 및 사전심사
 2. 부서업무 수행관련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행위 점검

3. 경쟁법 및 관련법령, 자율준수제도 관련 부서 직원 상담
4.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담당자에게 보고
5. 부서별 CP관련 목표 관리
6.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하는 활동
7. 제1호 내지 제6호 관련 내용의 기록유지

제21조 (임직원의 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CP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조직의 자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CP 활동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CP 운영규정의 준수 및 CP 활동으로 인하여 사업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거나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임직원들에 대한 보복이나 차별 또는 징계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공정거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제23조 (인력과 예산의 지원)

- ①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 예산, 기타 관련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기타 관련 자원 등에 관하여 수요조사, 필요성 판단, 가용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최고경영자에게 필요자원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CP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수립하는 것이 어렵거나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CP 추진계획에서 필요한 항목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교육비, 편람제작비, 외부자문비, 전문인력 양성비, 교육 대관료, 주관부서 운영경비, 콘텐츠 개발비, 성과보상금, 홍보활동 추진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비용을 상황에 따라 추가 할 수 있다.

제24조 (CP 추진 계획의 수립)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매년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CP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고경영자와 최고이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CP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1. CP운영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에 대한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비즈니스 관계자의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3.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 법규위반 Risk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CP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5. 법위반 행위의 예방을 위한 감사, 감독, 보고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 및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7. 지속적 개선에 관한 사항
8. CP 운영성과의 효과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할 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Hot-Line, 신문고, 홈페이지, 내부제보 시스템 등을 통해 제기된 이슈
2. 관련 산업 및 동종 업계 등에서 발생한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 이슈
3. 임직원의 CP에 대한 인식 및 경향
4. 경쟁법 및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규제환경 등의 변화에 관한 사항
5. CP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6. 감사,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위반행위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결과 및 교육효과
8. 기타

제25조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과 의견수렴)

①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또는 당사자 스스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1. 내부이해관계자는 이사회, 최고경영자, 경영진, 관리자, 임직원, 노조, 사내커뮤니티 그룹 등을 말한다.
2. 외부이해관계자는 정부, 주주, 투자자, 고객, 국제기구, NGO, 협회, 전문기관, 협력회사, 대리점, 의약품 판촉업자(CSO), 납품업체, 언론, 경쟁사업자,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② 회사는 적합하고 효과적인 CP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공정거래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설문서

2. 고객만족도 조사
3. 영업채널
4. 간담회
5. 핫라인, 사이버신문고, 사내소통채널, 노동조합
6. 홈페이지
7. 정책간담회
8. 기타

③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의사소통을 시행할 때는 다음 각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의 의견
2. 회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3. 회사의 공정거래자율준수 목표, 의무사항
4. 의사소통되는 정보의 신뢰성
5. 불만, 문제제기, 이슈 발생시 관련 의사소통에 대응

④ 이해관계자 요구와 의견수렴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요구사항과 의견은 CP운영을 위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 CP 추진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 이슈 식별)

① 이슈의 식별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활동, 임직원의 업무활동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 및 내부 요인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공정거래자율준수 관점에서 관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회사는 바람직한 CP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이슈를 정기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1.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의 의무사항 규제 이슈
2. 관련 산업 및 동종 업계 등에서 발생한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의 위반 이슈
3.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기되는 이슈
4. 기타

③ 제1항에 따라 식별한 이슈는 CP 추진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 (경쟁법 및 관련법령 의무사항 파악 및 결정)

① 회사는 각 부문별 사업목표와 관련한 경쟁법 및 관련법령에 관한 의무사항을 식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식별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1. 규범적 의무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경쟁법 및 관련법령
- 나. 공정경쟁규약
- 다. 공정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규제기관의 행정명령 및 판례 등
- 라. 조약, 협정, 허가조건, 수권서 등

2. 자발적 의무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이해관계자 그룹 또는 비정부 기관과의 협정
- 나. 대리점 및 의약품 판촉업자와의 협정
- 다. 공공기관 및 소비자와의 협정
- 다. 방침 및 절차와 같은 회사의 규정, 사규 등
- 라. 자율준수 방침 또는 행동강령
- 마. 외부에 제공되는 정보(표시광고 등) 또는 환경 선언
- 바. 조직과의 계약적 합의하에 발생하는 의무
- 사. 관련 조직 및 업계 표준.

③ 의무사항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가. 의무사항이 미치는 영향
- 나. 의무사항의 관리 주체
- 다. 의무사항과 관련된 관리방법
- 라.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Risk 평가

제28조 (CP 관련 목표와 추진계획의 수립)

① 최고경영자는 공정한 자율준수문화의 정착과 자발적 행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에게 전사적 CP 관련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속적 목표달성을 통한 공정거래문화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CP 관련 목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CP 방침 및 정책과의 일관성
2. 국제규범, 관련 법규, 사내규정 등을 고려
3. 측정가능성(가급적 정량적 목표를 수립)
4. 달성가능성
5. 이해관계자의 요구
6. Risk 평가 결과
7. 해당 부서의 상황

③ 최고경영자는 CP 관련 목표를 측정가능한 지표로 성과평가 또는 KPI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측정가능한 지표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단, 여기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 위험성 관리효율(Risk 감소건수/발생 건수)

위험성 예방을 위한 실사 계획 건수 대비 실행 건수

교육참여율 및 성취율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식별 활동 비율

자발적 개선활동 비율

내부심사 및 부적합 개선 비율

④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시 사항(누가, 무엇을)
2. 필요한 자원
3. 책임자
4. 목표의 달성 시기
5. 결과의 평가 방법.

제29조(CP 관련 목표 달성 추진 계획의 관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목표를 <별지 1> “CP 목표관리 대장”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대로 달성되는지를 지속적 관리하여야 한다.
- ② CP 관련 목표는 임직원들에게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 ③ CP 관련 목표는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 ④ CP 관련 목표는 적절하게 갱신되어야 한다.
- ⑤ CP 관련 목표는 인원의 성과평가에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⑥ CP 관련 목표 대비 달성실적이 미비 혹은 달성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수행하거나 목표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0조 (목표에 관한 모니터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에 대한 성과와 관련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 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및 측정이 필요한 대상
 2. 목표달성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방법
 3. 모니터링 및 측정 시기
 4.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의 분석 및 평가 시기
 5.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③ 모니터링 결과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이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등)

- ① 회사는 C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CP 활동에 대한 세부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법 및 관련 법령 등에 관한 내용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한다.

1. 경쟁법 및 관련법령 준수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경영방침 및 원칙
2. 경쟁법 및 관련 법령의 개요 및 기업 의무와 관련되는 조항에 대한 소개 및 해설
3. 경쟁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가. 해야 할 일(Do)
나. 하지 말아야 할 일(Don't)
4. 경쟁법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유형
5. 경쟁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조치 및 절차
6. 업무 분야 및 부서별 경쟁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주요 사례
7. 명백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의 의심이 가는 행위 인지에 도움이 되는 행동 수칙
8. 사전업무협의제도 및 직접보고체계의 취지 및 활용 방법

② 자율준수편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1. CP의 취지에 맞게 경쟁법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
2. 임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3. 경쟁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적용 및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우선 배포
4. 경쟁법 및 관련법령과 CP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개정
5.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 각 업종, 거래행태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

③ 자율준수편람은 웹북, 책자, 전자문서 등 임직원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정보망(인트라넷, 클라우드, ERP,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임직원들이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경쟁법 및 관련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이 자율준수편람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27조 (경쟁법 및 관련법령 의무사항 파악 및 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자율준수편람 개정사항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자율준수편람의 개정에 관한 검토는 년2회 주기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 (자율준수편람의 활용)

①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준수편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법 및 관련법령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은 자율준수편람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나 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 관리부서에 관련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조직은 임직원들이 자율준수편람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교육훈련 기본방침)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CP 및 윤리·준법의식의 함양
2. 직무교육(OJT) 및 자기계발
3. 직무교육 및 자기계발의 지원
4. 임직원 능력개발의 자기책임주의 확립
5. 모범적인 인재상과 인력관리체계 확립
6.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활용자세 확립

제34조 (교육훈련 구분)

교육은 사내교육, 위탁교육, 원격교육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사내교육 : 자율준수관리조직이 주관하며 실시하는 모든 교육
2. 위탁교육 : 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사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3. 원격교육 : 온라인 교육기관 또는 온라인플랫폼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 및 장소에 관계 없이 실시되는 교육

제35조 (교육훈련 관련 책임과 권한)

① 최고경영자와 임원은 CP를 주제로 하는 교육, 세미나, 회의, 포럼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반기당 1회 이상 반드시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② 모든 직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CP관련 교육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임직원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계획의 검토
2. 교육필요성에 대한 검토
3. 교육효과성에 대한 검토
4. 교육예산, 교육절차, 교육규정, 포상 및 징계에 대한 필요성 검토 등

④ 자율준수관리조직의 CP 교육관련 업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회사의 CP 목적달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장·단기 교육계획의 수립
2. 회사의 연간 CP 관련 교육계획, 방침 및 관련 예산 수립
3. 회사의 CP 관련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 필요성에 관한 판단
4. 각 부문의 CP 교육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사료의 책정
5. CP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6. CP 교육 교안, 교육장,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7. CP 관련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8. CP 관련 교육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제36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목적과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임직원간의 지식의 차이를 반영하여 반기당 1회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취지 및 목적
2. 교육 대상자 및 부서
3. 교육 전담강사의 지정 및 역할 정의
4. 교육내용(CP의 이해 및 임직원 의식 내재화, CP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필요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5. 교육교재의 제작 및 활용 방안
6. 교육의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구분 등)
7. 교육성과 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
8. 연간 교육일정
9. 기타 필요사항

②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의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 규범
2. CP 기준과 절차 및 자율준수편람
3. 경쟁법 및 관련법령 준수사항(의무사항)
4.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험성 관리 방법
5.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 사례
6. 내부제보 절차와 방법

④ 교육훈련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임직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교재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 계획은 제24조 CP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제37조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필요성에 대한 판단)

① 자율준수관리조직은 매년 CP운영과 관련한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수요 조사는 설문, 간담회, 의사소통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한다.

③ 교육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쟁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위반 행위 발생 여부
2. 임직원들의 인식수준

3.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및 의사소통 결과
4. 법령, 국제기준, 사내규정 등 의무사항의 제·개정에 따른 영향
5. Risk 평가 결과
6. CP 목표 달성 여부
7.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결과

제38조 (교육의 실시)

- ① 사내교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자율준수관리조직은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실시 세부사항을 각 부서로 통보한다.
여기에는 대상 직군, 인원, 교육내용,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장 내의 질서 및 제반 교육수칙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강사는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4. 교육교안은 교육개시 15일 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 ② 사외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 사외위탁교육은 사내교육을 통해서는 충분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전달 등에 관한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의뢰기관은 교육내용 및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3. 교육대상자 선발시에는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교육기간에 따라 필요시에 교육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 (특별 교육 및 집중교육)

- ① 부서의 성격, 과거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반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교육과정 미이수 또는 미수료자, 불합격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과 집중교육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 및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내용, 교육절차 등은 제36조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40조 (교육평가)

- ① 교육의 평가는 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만족도), 피교육자 등에 관한 평가(시험 등), 강사에 대한 평가(역량), 피교육자 이수율, 피교육자 참석률로 구분한다.
- ②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평가의 방법은 필기시험, 논문, 레포트, 설문지, 평가서, 골든벨 등 교육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외위탁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보고서, 교재제출, 수료증, 성적평가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 ④ 교육훈련 평가 결과는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인사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41조 (교육훈련 상벌)

- ① 교육분위기 조성 및 사기양양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1. 포상 : 당해년도 사내.외에서 실시한 교육성적우수자는 최고경영자의 재가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징계
 - 가. 교육성적 불량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중지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미이수자로 간주되며, 교육평가지 최하점을 부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육 미이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교육불참자
 - ㉡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 ㉢ 교육기간 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 포기한 자
 - ㉣ 과제물 미제출자
- ② 제1항의 처리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소요된 경비전액을 반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위탁교육시 교육미이수자로 간주되는 경우
 3. 기타 최고경영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42조 (교육훈련 기록관리)

- ① 모든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과정명
 2. 교육훈련 참석자 서명
 3. 교육훈련 교재
 4. 교육훈련 평가 결과
- ② 연간 교육실적은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내부감시체계

제43조 (법위반 행위의 감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의 의무사항의 이행, 법위반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24조 CP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최고경영자 및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위반 행위의 예방을 위한 내부감시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1. 감독 : 법위반 행위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사전적 예방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쟁법 및 관련법령 의무사항 파악 및 결정

나. 경쟁법 및 관련법령 Risk 평가

라. CP 운영관련 목표의 수립 및 달성계획

마.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등과 관련한 사전업무협의 절차

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의견수렴

사. 교육훈련 등의 활동

아.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보급, 활용

2. 감시 :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준, 절차, 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운영·준수 상태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니터링 및 점검

나. 내부감사 및 내부심사

다. 성과평가

라. 내부고발제도의 운용

마. 기타 활동

3. 보고 : CP 운영에 관한 성과,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최고 경영자와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활동으로 직접보고체계에 대한 보장을 말한다.

제44조 (경쟁법 및 관련법령 Risk 평가)

① 회사는 CP 운영 및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한 경쟁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정기 Risk 평가를 사업계획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Risk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1. Risk 평가 목적

2. Risk 평가 주기

3. Risk 평가 방법

4. Risk 평가 대상

5. Risk 평가 결과

③ Risk 평가는 Risk 식별(파악), Risk 분석(원인파악) Risk 추정(발생가능성×영향도), Risk 수준(우선순위) 검토를 포괄하는 절차로 <별표1> “Risk 평가 프로세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Risk 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지식과 견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반복적이며 협력적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

- ⑤ Risk 평가는 사업계획, 업무분장 등에서 정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Risk에 대한 발생가능성(5단계)과 발생한 Risk가 야기하는 위험성인 영향도(5단계)로 평가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 수립 직후에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Risk 평가는 회사의 외부와 내부 상황, 과거의 사건(빈도), 미래의 발생가능성, 영향도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야 한다.
- ⑦ Risk 평가는 회계연도 12개월 간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⑧ Risk 평가 결과는 <별표2> “경쟁법 및 관련법령 Risk 평가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⑨ 주관부서는 현업부서 등에서 평가한 경쟁법 및 관련법령 Risk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해당 현업부서에 피드백 할 수 있다.
 - 1. 이전에 발생한 회사 내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 Risk 정도
 - 2.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측 가능한 Risk
 - 3. 유사 업무에 대한 Risk 평가 정도
- ⑩ 현업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Risk 평가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최초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Risk 평가를 재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⑪ 주관부서에서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Risk 평가를 실시하여 회사 내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Risk를 관리한다.
- ⑫ Risk 평가 결과는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고유 Risk의 식별)

- ① 고유 Risk는 통제 및 관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Risk를 말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으로 의심이 될 만한 위험은 고유 Risk로 식별하여야 한다.
- ② 고유 Risk를 식별하는 목적은 회사의 목표 달성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 인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최신의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유 Risk를 식별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인 고유 Risk를 식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요인과 이러한 요인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 1. 회사의 규모, 구조 및 위임된 의사결정 권한
 - 2. 회사의 운용 또는 운용이 예상되는 위치와 부문
 - 3. 회사의 활동 및 운용의 성질, 규모 및 복잡성
 - 4.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 5.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및 조직을 통제하는 지주회사, 모회사
 - 6. 회사의 비즈니스 관계자
 - 7. 공직자와의 상호 작용 및 성질과 정도

8.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제적, 계약적 및 직업적 책임 및 의무

④ 모든 임직원은 그 해당 Risk가 통제하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잠재적인 고유 Risk를 식별해야 한다.

⑤ 고유 Risk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다양한 유형 또는 무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결과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46조 (고유 Risk 분석 및 원인 파악)

① 고유 Risk 분석의 목적은 고유 Risk 수준을 포함하여 고유 Risk의 발생원인, 발생형태 등 전반적인 Risk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② 고유 Risk 분석은 불확실성, 위험 원인, 심각성, 가능성, 사건 및 사고, 시나리오, 안전조치 및 그 효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유 Risk 분석은 분석의 목적, 정보의 가용성 및 신뢰성, 사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세부 사항과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고유 Risk 분석 및 원인 파악 기술은 상황과 의도된 용도에 따라 정성적, 정량적 또는 이들을 조합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⑤ 고유 Risk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사건의 영향도(심각도), 발생가능성, 빈도

2. 사건의 성격과 규모

3. 복잡성과 연결성

4. 시간 관련 요인 및 변동성

5. 기존 통제의 효과

6. 민감도와 신뢰 수준

⑥ 고유 Risk 분석 및 원인 파악은 의견, 편견, 위험에 대한 인식 및 판단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⑦ 고유 Risk 분석 및 원인파악은 Risk평가, Risk 처리 여부 및 방법, 가장 적절한 Risk 감소조치 및 윤리방침 수립에 대한 기본 정보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7조 (고유 Risk 판정)

① 고유 Risk 분석 결과는 발생가능성, 영향도(심각도),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유 Risk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고유 Risk 수준에 대한 판정은 <별표3> “고유Risk 평가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고유 Risk 판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더 넓은 맥락과 외부 및 내부 이해 관계자자가 이해하고 있는 심각성의 수준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형 및 무형의 위험 요소

2. 원인과 사건

3. 위협과 기회
4. 약점과 강점
5. 외부 및 내부 상황의 변화
6. 새로운 위협의 징후
7. 자산과 자원의 특성과 가치
8. 결과 및 목표에 미치는 영향
9. 지식의 한계와 정보의 신뢰성
10. 시간 관련 요인
11. 관련된 사람들의 편견, 가정 및 신념 등

제48조 (Risk 관리)

- ① Risk 관리는 평가된 고유 Risk를 경감 또는 완화, 분산 또는 이전, 회피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는 정기적인 고유 Risk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Risk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Risk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경감 또는 완화)

- ① 특정한 Risk와 관련하여 확률 및 결과 또는 이들 모두를 줄이기 위한 관리(통제)활동을 통해 특정한 사건의 부정적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말하여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 교육
 2. 모니터링
 3. 내부심사
 4. 의지표명
 5. 실사
 6. 서약서 징구
 7. 업무의 재조정
 8. 업무절차 등 규정의 정비
 9. 사전 심의체 또는 협의체의 심의
 10. 운영 성과의 평가 등
- ② Risk 경감 또는 완화 조치는 연간 Risk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Risk 경감 또는 완화 조치가 Risk 완화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 개선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 (Risk 이전 또는 분산)

- ① Risk 이전 또는 분산이란 특정한 Risk로부터의 손실 부담 또는 이득 혜택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 Risk가 있는 업무의 외주처리
 2. Risk 손실에 대한 보험 가입
 3. 비즈니스 관계자의 다변화
- ② Risk를 이전 또는 분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Risk 관리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 ③ Risk를 이전 또는 분산하기 위한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Risk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 (Risk 회피)

① Risk 회피는 제12조에서 정한 관리활동이 실질적으로 Risk 완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 당해 Risk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으로 Risk 상황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물러나는 행동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 계약의 거절
 2. 계약의 해지
 3. 거래관계의 중지 또는 참여 거부
 4. 참여활동의 제한
 5. 사업활동 철수
- ② 전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체,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52조 (Risk 허용도)

- ① Risk 허용도는 고유 Risk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리절차를 실시하고 남은 잔여 Risk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한다.
- ② 관리절차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Risk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제 후에 남은 잔여 Risk가 사고 또는 사건으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계약적, 비용적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 Risk 허용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③ Risk 허용도는 고유 Risk 평가 결과에 따라 허용한계 수준을 조정할 것인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④ 제1항의 Risk 허용도는 Risk 평가 결과 저위험군(Low Risk)에 해당하는 Risk 수준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별표 3> “고유Risk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53조 (통제수단의 효과성 평가)

① 평가된 고유 Risk를 관리하기 위하여 실행한 Risk 관리절차가 실질적으로 Risk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통제수단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통제수단의 효과성 평가는 Risk의 원인, Risk 형태, Risk 정도, Risk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통제수단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때는 관리 Risk에 관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Risk 관리 절차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별표4> “Risk 관리 조치 및 통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 (잔여 Risk 판정 및 관리)

- ① 잔여 Risk는 고유 Risk에 관리절차와 통제활동을 적용하고 남은 Risk를 말한다.
- ② 잔여 Risk 산출은 고유 Risk 결과 값에 통제활동의 효과성 점수의 합계를 차감하고 남은 Risk로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한다.

[잔여 Risk 산출 공식]

- 잔여 Risk = 고유 Risk 점수 - {통제수단의 효과성 점수 합계}
 - 잔여 Risk 허용도 : 9점 이하
- 예) 협력업체로부터 접대 및 금품 수수 사례 예시(발생가능성 4, 영향도 3)
- 고유 Risk 크기 : 발생가능성 4 × 영향도 3 = 12 (중위험군)
 - 통제수단 : 하도급법 및 청탁금지법 3시간 이상 교육(시험 실시)효과성 점수 5점

임직원 서약서 징구	효과성 점수 1점
분기별 목표 달성 모니터링	효과성 점수 3점
 - 잔여 Risk : 12점(고유 Risk 점수) - 9점(통제수단 효과성 점수 합계) = 3점 (저위험군)

- ③ 잔여 Risk가 허용도(Low)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리활동을 실시하여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추가적인 Risk 완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Risk가 제거되지 않거나 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 (사전업무 협의)

- ① 임직원은 효과적인 CP 운영과 경쟁법 및 관련법령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모든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통한 사전업무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전 업무 협의의 대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와의 거래, 자산, 인력, 비용 등의 지원관련 사항
 2. 영업, 판촉, 마케팅, 홍보등과 관련한 사항
 3. 기부, 협찬, 후원 등과 관련한 사항
 4. 공정거래규제, 하도급거래규제, 표시광고규제 등과 관련한 사항
 5. 경제적이익 제공 및 지출보고서 등과 관련한 사항
 6. 신규계약, 갱신계약 등 제약조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③ 제2항에서 정의한 사전업무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자율준수관리조직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현업부서에서 사전업무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자체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현업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조직의 검토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개최를 대체할 수 있다.
 - ⑤ 자율준수관리조직은 현업부서에서 사전업무 협의 대상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관련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⑥ 사전업무 협의내용에 대한 기록, 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6조 (직접보고체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1. 규제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 2. 경쟁법 및 관련법령 의무사항의 변경과 그러한 사항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새로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안사항
 - 3. 법규위반 및 지속적인 개선을 포함한 CP 성과측정 결과
 - 4.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과 분석결과
 - 5. 위반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시정조치 사항
 - 6. CP 운영의 효과성, 실적(성과) 및 경향에 대한 정보
 - 7. 규제기관과의 접촉 및 관계의 발전
 - 8. 내부감사, 내부심사 등 평가결과 및 모니터링 활동에 의한 결과
 - 9. CP 추진계획 등에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 계획의 실행 결과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접 보고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7조 (내부제보)

- ① 회사의 임직원은 CP 운영규정, 경쟁법 및 관련법령의 위반행위를 인지하였거나,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인 확신을 가진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조직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제보의 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1. 자율준수방침에 대한 위반시도, 의심, 위반 행위
 - 2. 경쟁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행위
 - 2. CP 규정에 대한 위반 행위

3. 회사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수수 등에 관한 행위
 5. 회사의 기밀 정보 또는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6. 기타 경쟁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등
- ③ 내부제보를 하는 제보자는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인 의도로 제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보하여야 한다.

제58조 (내부제보 절차)

- ① 제57조에 따라 내부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에 관여한 관계자 (당사자 및 상대방 포함)
 2.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 (관련법규, 관련 행위 등을 포함)
 3. 위반행위의 정도(기간, 관련자 직급 수준 등)
 4. 기타 관련 정보
- ② 제1항에서 내부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보를 하여야 한다.
1. Hot-Line
 2. 홈페이지내 제보 채널
 3. 건의함 또는 제보함
 4. 이메일 또는 우편
 5. 기타 외부 제보시스템
- ③ 제2항에 따라 내부제보가 접수된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조직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는 이해상충이 없는 인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내부제보에 대한 내용,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은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 (내부제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원보호)

- ① 회사는 제58조에 따라 내부제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신고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보자에 대한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의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익명을 보장하는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 (내부제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① 제58조에 따라 내부제보가 이루어진 경우, 자율준수관리 조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내부제보 내용에 대한 접수

2. 내부제보 내용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3. 내부제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팀 구성
 4. 내부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협조요청
 5. 내부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시 제보자에 대한 신원보호 및 비밀보장 조치
 6. 내부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7. 내부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8. 내부제보 내용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교육훈련 등 개선조치 실행
 9. 내부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관리
- ② 제1항에 의거 내부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보장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는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조사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조사는 객관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중인 제보내용에 대한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그 당사자임을 알 수 있거나 미루어 알수있는 내용 등을 직·간접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내부조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발생한 곳은 어디인가
 2.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은 언제인가(과거, 현재, 장래, 진행 중)
 3. 위반행위에 연루된 사람은 누구인가
 4. 이전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
 5.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위반했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6. 위반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7. 경영진이 부정행위에 관여하고 있는가, 또는 인지하고 있는가
 8. 행위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Risk는 있는가
 9. 신고를 뒷받침하는 문서 또는 기타 증거(사진 등)는 있는가
 10. 위반행위를 직접 알고 있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11. 제보내용과 조사결과는 일치하는가
 12. 위반행위를 은폐하려 한 자 또는 제보를 방해한 자가 있는가
 13. 위반행위의 은폐 또는 제보를 방해한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었는지
 14. 기타 필요사항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및 최고이사결정기구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내부제보에서 위반행위 등에 관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위반행위의 수준, 정도, 관련직급 등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제7장에 규정한 기준에 따른 제재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6장 효과성 평가와 개선

제61조 (효과성 평가)

- ① CP가 경쟁법 및 관련법령, 산업규약, 회사의 규정 및 정책에 적합하게 부합하는지와 CP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효과성 평가는 CP 운영성과에 대한 강점과 약점,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자율준수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을 위하여 취한 각각의 활동과 종합성과를 포함하여 CP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제24조 CP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 (효과성 평가 대상 및 고려사항)

- ① 효과성 평가는 CP 운영을 위하여 취한 활동에 대해서 그 활동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1. 교육훈련 활동
 2. 경쟁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Risk 평가 활동
 3. 내부감사 및 내부심사 활동(단, 자신의 업무를 자신이 감사 또는 심사는 금지한다)
 4.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등 사전업무협의 활동
 5. 모니터링, 성과평가 관련 활동
 6. 통제수단 또는 통제활동
 7. CP 운영에 대한 종합 성과
 8. 기타
- ② CP 활동에 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CP 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접수된 불만
 2.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 위법행위 발생 수준 및 정도
 3. 경쟁법 및 관련법령의 Risk 평가 결과
 4. CP 관련 목표의 달성 유무
 5. 임직원의 CP에 대한 인식 및 이해관계자의 인식의 변화 등
 6. 이해상충의 발생
 7. 이전 효과성 평가 결과(정기감사, 내부심사 관련 기록 등)
- ④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절차,운용 등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마련한다

제63조 (효과성 평가 방법 등)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국한하지 않는다.

1. CP 목표 달성, 의무사항의 준수, 위험성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2. 내부감사 또는 내부심사
3. 모의훈련 또는 테스트
4.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
5. 회사의 CP 정책 및 운용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

제64조 (모니터링, 성과측정, 분석 및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 활동에 관하여 공정거래자율준수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모니터링은 CP 추진계획의 적절한 이행, 임직원의 준수여부, CP 운영목표의 달성 등에 대한 적합성,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대상 선정 시 회사의 모든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심각한 불공정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대상 선정 시 경쟁법 및 관련법령, 공정경쟁규약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과 CP 추진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5조 (모니터링, 성과측정, 분석 및 평가의 책임과 권한)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니터링팀 구성
 2.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점검 및 조사
 3. 모니터링계획서 및 보고서 승인
 4.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및 그 결과의 대표이사 보고
 5. 모니터링 결과 공정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② 자율준수관리부서의 모니터링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시행
 2.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3. 모니터링 결과 분석,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4. 모니터링 지적사항 등의 시행여부 점검 및 후속 조치 확인
- ③ 수검부서의 모니터링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니터링 활동 협조
 2. 모니터링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 계획수립 및 시행
 3. 모니터링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 보고 등

제66조 (모니터링, 성과측정, 분석 및 평가 절차)

- ①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의 대상
 - 2. 모니터링 책임자
 - 3.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방법
 - 4.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수행 시기
 - 5.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의 결과 분석 및 평가 시기
 - 6.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결과 보고 대상 및 방법
- ② 제1항제1호의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의 대상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적합성 및 효과성 여부를 모니터링, 성과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1. 설정된 CP 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 상태
 - 2. CP 추진계획의 이행 및 현업부서의 참여 상태
 - 3. 경쟁법 및 관련법령과 그 밖의 공정경쟁규약 등의 준수 및 이행상태
 - 4. 심각한 의무사항 위반 또는 불공정거래 발생요인에 관련된 운영절차의 이행상태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의거 수립된 모니터링, 성과측정 계획을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대상 부서, 인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모니터링 계획은 제24조 CP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 ④ 자율준수관리조직은 모니터링, 성과측정 및 준수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시 대상별 체크리스트, 측정기록부 또는 기타 기록서에 모니터링/성과측정 결과를 기록한다.
- ⑥ 모니터링 결과는 최고경영자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CP 운영에 대한 성과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7조 (경영검토)

- ① CP 운영활동의 적절성, 경쟁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준수성, CP 운영의 효과성 등에 관한 성과와 문제점을 확인 및 평가하여 준법경영활동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자율준수 정책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와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CP 운영성과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경영검토는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별 경영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경영검토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경영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 ④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보고한 경영검토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유지·개선,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책 또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포함된 최종경영검토 요약자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포함된 요약자료를 접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68조 (경영검토 내용)

① 최고이사결정기구 및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경영검토보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여 여기에 국한하지 않는다.

1. CP 목표 달성 정도, 의무사항 준수상태, Risk 평가 변화
2. 법규위반 등에 따른 후속조치의 상태
3. CP 운영 활동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화
4.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기대 변화
5. 모니터링 및 내부심사 등을 통해 파악한 CP 활동의 성과에 대한 정보
6.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최고경영자와 최고이사결정기구는 전항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그 신뢰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특별 경영검토의 경우 해당 경영검토의 목적에 맞게 검토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9조 (경영검토 의사결정)

최고경영자와 최고이사결정기구(이하 "자율준수관리자"라 함)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한 적합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과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CP 활동의 효과성과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조치
2. CP 활동 관련 성과 개선 조치
3. 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조치
4. 조직의 방침과 목표 개정 조치
5. 직접보고체계의 효과성 개선 조치
6. 관리방법의 적절성과 효과성 개선 조치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70조 (경영검토 기록의 활용 및 관리)

① 경영검토 결과는 차기 사업계획의 수립, CP 활동에 대한 정책의 수립, 제도 및 절차의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경영검토 결정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는 차기 경영검토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영검토 결과는 경영검토보고서, 회의록 등의 문서화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자율준수활동에 대한 포상 및 제재

제71조 (포상 등)

- ① 임직원이 CP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 제고, 투명성 확보, 공정거래질서 조성 등 자율준수문화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공로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1. 제41조제1항제1호 교육성적 우수자
 - 2. 제55조에 따른 사전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범위반 예방 효과가 큰 경우
 - 3. 제57조에 따른 내부제보를 통하여 범위반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한 효과가 큰 경우
 - 4. 기타 최고경영자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에서 공로를 인정한 경우
- ③ 포상은 기여한 공로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인센티브 등의 성과금
 - 2. 인사고과 평정에서 가점 또는 마일리지
 - 3.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기프트콘 등
 - 4. 휴가
 - 5. 기타

제72조 (제재 조치)

- ①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쟁법 및 관련법령, CP 운영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규에 의거하여 인사 제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재에 대하여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제73조 (제재의 절차)

- ① 제60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협약의 제60조에 따른 조사결과 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주의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74조 (문서관리 기본원칙)

- ① CP 운영활동 중에 생성된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 ② CP 운영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

도록 정확하게 기록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문서관리에 대한 책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필요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이용가능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
2. 부적절한 사용 및 안정성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책임
3.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기록 및 시정조치 결과문서 관리책임
4. 기록의 변경, 은닉, 멸실, 수정 등으로부터 관련문서를 보호할 책임
5. 기타

④ 문서관리 절차의 수립 및 운영은 자율준수관리조직에게 위임하여 실무 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관리대상 문서)

자율준수담당자가 관리해야 할 문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및 자율준수방침
2. 자율준수관리자 임명문서
3. 자율준수편람
4. 내부신고절차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및 조사결과
5. 내부 감독, 내부심사 활동과 모니터링 관련 문서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문서
7. 자율준수 교육결과보고서
8. CP 운영규정에 따라 생성되거나 산출된 문서
9. 자율준수활동과 관련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10.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자료 등

제76조 (운영상황 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상황을 제8조 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내외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전자공시시스템
2. 상장공시시스템
3. 홈페이지
4. 기타

제77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자율준수문화의 조성과 최신 관련 규제정책 동향 파악 등을 위하여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과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8조 (관련 규정의 준용 및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사규 등에 관련 내용을 위임하거나 이미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중인 규정을 준용하여 CP 운영규정의 일부로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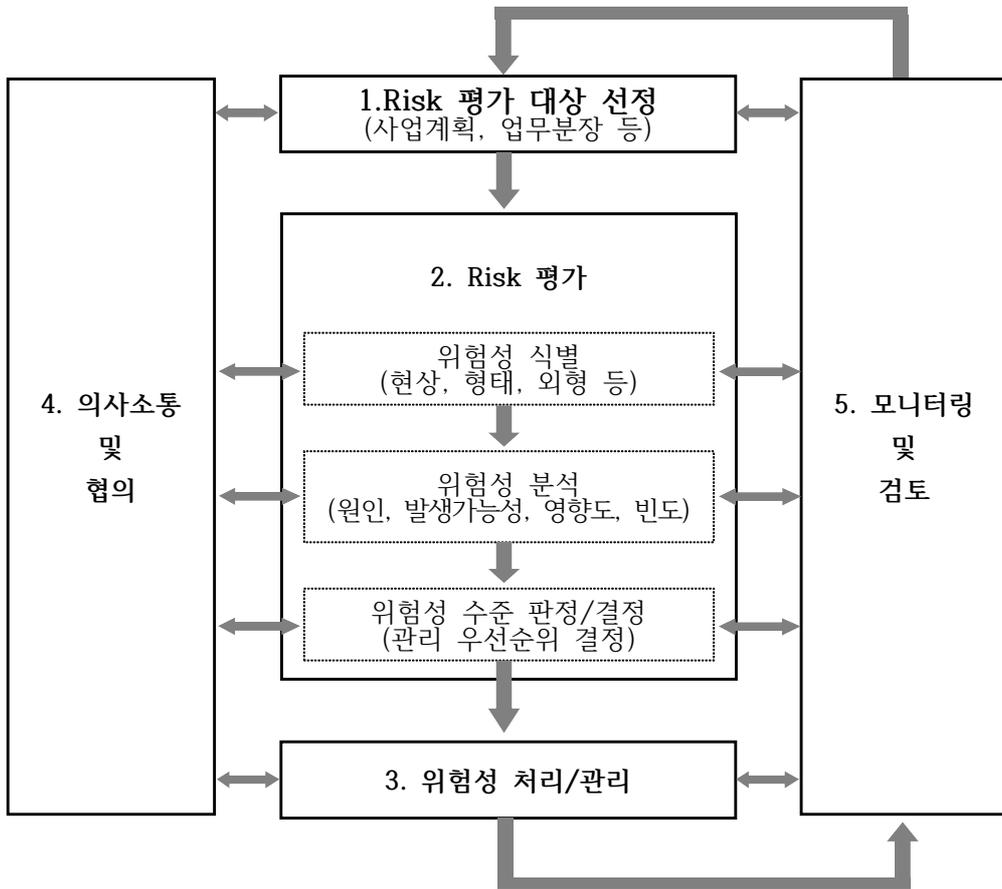
<부칙>

이 규정은 2024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공정거래자율준수 목표관리 대장”

공정거래자율준수 목표 관리대장						결재	작성	검토	승인
관리부서	작성자		작성일자	관리기간		~			
공정거래자율준수 목표	관련 업무	세부추진계획	달성기준	추진일정	담당자	관련지표			

<별표1> Risk 평가 프로세스



<별표3> 고유 Risk 평가 방법

1. 회사의 고유 Risk 평가는 Risk의 발생가능성, 영향도(심각도)를 기본 평가척도로 적용한다.
2. 발생가능성, 영향도를 곱하여 산출된 결과 값을 고유 Risk라 한다.
3. 고유 Risk의 결과 값이 높은 것부터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우선순위가 부여되면 Risk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Risk의 원인과 성격에 적합한 통제수단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영향도(심각도) 평가 기준

구분(값)	재무적 영향평가 요소 (영업이익 환산액)	비재무적 영향평가 요소
5점 (매우높음)	5억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전략에 전면적인 제동이 걸려 지속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 •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 초래 • 행정적 제제(과징금, 과태료, 고발)와 사법적 제제(형사처벌 등)가 동시에 취해지는 정도 • 행정, 민사, 형사 소송이 수반되는 경우 • 행위자의 직급이 임원급 이상 •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규 위반
4점 (높음)	5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중요한 전략의 이행중지 •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 초래 • 행정적 제제(과징금, 과태료, 고발)와 사법적 제제(형사처벌 등)가 동시에 취해지는 정도 • 행정, 민사, 형사 소송이 수반되는 경우 • 행위자의 직급이 파트장, 부서장, 팀장 등인 경우 •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규 위반
3점 (보통)	1억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부문 및 1개 이상 부서의 전략/목표 달성에 상당한 차질 초래 • 행정적 제제(과징금, 과태료, 고발) 또는 사법적 제제(형사처벌 등) 중 하나의 제제가 취해지는 정도 • 행정, 민사, 형사 소송이 수반되는 경우 • 행위자의 직급이 팀내 중간 관리자인 경우 •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규 위반
2점 (낮음)	5천만 원 미만 ~ 1천만 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부서의 전략/목표에 차질 초래 • 장기적인 성과 목표에 잠정적으로 영향 초래 • 행정적 제제(과징금, 과태료, 고발)만 취해지는 정도 • 소송이 수반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 행위자의 직급이 팀원인 경우 • 규정의 해석상 오류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규 위반
1점 (매우낮음)	1000만 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부서의 당해 목표 달성에 차질 발생 • 정상적인 사업 관행하에서는 기존자원 및 프로세스로 영향을 통제 관리 가능 • 행정적 제제가 경고(서면경고 포함)로 취해지는 정도 • 소송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 행위자의 직급이 팀원인 경우 • 실수 등 경미한 사규 위반

2) 발생가능성 평가 기준

구분	발생가능성 요소	발생확률
5점 (매우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한 규제 강화 또는 회피가 발생가능한 경우 • 사내관리규정, 통제활동, 교육 등의 미비 또는 미시행이 발생 가능한 경우 • 외부 대형 이슈가 발생하여 회사에 직접적 조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5년 이내에 경쟁법 또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 및 불법적인 행위가 11회 이상 발생한 경우 	
4점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이해관계자의 인식의 미비,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문제제기, 외부 대형 이슈가 발생하여 관련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영향력이 높은 경우 	60% 미만 ~ 4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5년 이내에 경쟁법 또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 및 불법적인 행위가 8~10회 발생한 경우 	
3점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의 문제나 이슈제기 또는 내부에서 불만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성과, 실적에 따른 압박, 부담 등의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40% 미만 ~ 21%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5년 이내에 경쟁법 또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 및 불법적인 행위가 5~7회 발생한 경우 	
2점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에서는 문제나 이슈가 없으나 외부에서 관련 문제나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 자기 합리화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예 : 경쟁사업자들이 XX한 행위를 한다 등) 	20% 미만 ~ 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5년 이내에 경쟁법 또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 및 불법적인 행위가 2~4회 발생한 경우 	
1점 (매우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와 외부에서 문제나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1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5년 이내에 경쟁법 또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 및 불법적인 행위가 1회 이하로 발생한 경우 	

4) 고유리스크 판정, 허용도 및 관리 순위

고유리스크 결과 값 (영향도 × 발생가능성)	리스크 판정	관리순위
20점 이상	HIGH (고위험)	1등급
10점~19점	MEDIUM (중위험)	2등급
1점~9점	LOW (저위험) 허용도 범위	3등급

5) 고유리스크 Heat map

가. 발생가능성 × 영향도

발 생 가 능 성	5점	5	10	15	20	25
	4점	4	8	12	16	20
	3점	3	6	9	12	15
	2점	2	4	6	8	10
	1점	1	2	3	4	5
구 분		1점	2점	3점	4점	5점
		영향도				

<별표4> Risk 관리 조치 및 통제 기준

1. 조치 유형 및 조치 사례

조치	조치 사례
회피 (Avo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을 유발하는 비즈니스/제품의 조정, 재배치 * 위험한 고객(세분화) 및 공급자(채택 공급자 리스트) 관계 정리 * 신규 시장의 다각화 모색 * 당해 국가의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 및 전문가 고용
경감/감소 (Redu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선행적 통제도입 및 결과를 줄이기 위한 반응적 통제 도입 * 위험 분산을 위한 시장/고객의 다각화 * 경영진 활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 제한 수립(KPI: 핵심 위험 지표) * 부주의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훈련, 교육, 서약서 징구, 실사, 모니터링, 내부심사, 감사, 경영검토, 자발적 의지의 지속표명, 이해관계자 교육,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식별 및 개선 등
이전/분산 (Sh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가입 (예 : 공기지연 등에 대한 손해보험 등) * 공급자와 위험 분배 (예 : 협정, 협약, 양해각서, 계약 등)
허용/유지 (Ret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획득/허용(상세한 평가 후, 지속적인 “잔여 위험” 모니터링) * 자체 보험, 예: 위험의 손실을 대비한 재무적 준비금 마련

2. 조치 유형별 통제수단 효과성 판단 기준(예시)

조치방법	통제유형	통제수단	기준	효과성점수	비고
경감	교육 훈련	공정거래법 교육	3시간	5	시험을 치르는 경우 2점 가점 시간에 따라 차등한다
		청탁금지법 교육		4	
		컴플라이언스 교육		5	
		ISO 37301 교육		4	
		공정거래관련 법령 교육	2시간	3	
		하도급법 교육		3	
		자율준수방침 교육	1시간	2	
		CP 관련 내부 규정교육			
	모니터링	의무사항 준수 관련 모니터링	분기별	5	모니터링은 횟수, 깊이에 따라 차등한다.
			반기별	3	
			연1회	1	
		목표 달성 모니터링 교육훈련모니터링	분기별	3	
			반기별	2	
			연 1회	1	
	의지표명	중간 이상 리스크가 있는 비즈니스 관계자에게 자율준수방침 교부	연 2회	5	
			연 1회	3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준수방침 교부	연 2회	2	
			연 1회	1	
	재무적 통제	법인카드 사용 기준 준수	상시	3	
		현금 사용 불승인	상시	3	
		비용 집행 승인시 3단계 이상 검토	상시	5	
비용 집행 승인시 3단계 미만 검토		상시	3		
비재무적 통제	위탁 업체 선정시 관련 심의 위원회 회부	수시	5		
	SOP작성 및 시행 점검	수시	5		
	임직원 및 비즈니스관계자 서약서 징구	연 2회	5		
이전	외부 위탁	세무관련 정산 및 신고 관련 부분을 위탁	상시	10	
		행정서류 작성 및 업무처리 관련 부분을 위탁	상시	10	
		구매업무를 대행 업체에 위탁	상시	10	
		광고 기획 및 제작 업무를 외부에 위탁	상시	5	
회피	제재	감봉	위반여부	10	
		면직	위반여부	15	
		해고	위반여부	20	
		계약해지	위반여부	20	
		협력업체 자격 박탈	위반여부	30	

<참고>

CP 운영 규정과 CP 등급평가 지표 관련 문서대비표

CP 운영 규정	CP 등급평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제1조 (목적)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등)과 절차가 포함된 문서(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CP의 필요성)		
제4조 (CP 운영 원칙)		
제5조 (CP 8대 요소의 이행)		
제6조 (적용범위)		
제7조 (자율준수 방침의 제정 및 선언)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제8조 (자율준수 의지의 표명)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제9조 (CP 문화의 촉진 및 참여)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 (예: 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 하였는가?
제10조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3 최고경영자에서 일선 관리자까지의 CP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제11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제12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역할)		O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제13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소집 및 의결)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제14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C2.1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C2.1.1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CP 관리자를 임명하였는가?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 (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실 통보 등)
제1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자격요건)	C2.1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제1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제1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		
제18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CP 운영 규정	CP 등급평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제19조 (자율준수 관리조직)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제20조 (자율준수 관리조직의 업무 및 역할)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정기 감사)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안됨)
제21조 (임직원의 의무)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3 최고경영자에서 일선 관리자까지의 CP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제22조 (CP 활동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제23조 (인력과 예산의 지원)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회사로부터 충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D2.1 정기 CP 교육	D2.1.2 CP 교육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예:교육 콘텐츠 개발비, 전문가 강의로, 교육 대관료, 교육 주관부서 운영경비 등)되고 집행되었는가?
제24조 (CP 추진 계획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제25조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과 의견수렴)	D1.1 내용의 충실성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되어 있는가?
제26조 (경쟁법 및 관련법령 등 이슈 식별)	D1.1 내용의 충실성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제27조 (경쟁법 및 관련법령 의무사항 파악 및 결정)	D1.1 내용의 충실성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되어 있는가?
제28조 (CP 관련 목표와 추진계획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된 지표로 관리되었는가?
제29조 (CP 관련 목표 달성 추진계획의 관리)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된 지표로 관리되었는가?
제30조 (목표에 관한 모니터링)		

CP 운영 규정	CP 등급평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제31조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등)	D1.1 내용의 충실성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되어 있는가?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되어 있는가?
	D1.2 활용 편의성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D1.3 지속적 개선 여부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정책의 최근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제32조 (자율준수편람의 활용)	D1.2 활용 편의성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제33조 (교육훈련 기본방침)	D2.1 정기 CP 교육	D2.1.1 조직의 CP 교육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원), 부서(예: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및 필수 법규 위반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C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제34조 (교육훈련 구분)		D2.1.1 조직의 CP 교육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원), 부서(예: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및 필수 법규 위반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C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제35조 (교육훈련 관련 책임과 권한)	D2.1 정기 CP 교육	D2.1.1 조직의 CP 교육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원), 부서(예: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및 필수 법규 위반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C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D2.3.1 CP 교육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 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
제36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달수준 확인)
		D2.1.1 조직의 CP 교육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원), 부서(예: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및 필수 법규 위반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C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D2.1 정기 CP 교육	D2.1.3 CP 교육 계획 수립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D2.1.4 조직이 수립한 CP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교육완료 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기록 포함)
D2.2 법외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D2.2.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CP 운영 규정	CP 등급평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제37조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필요성에 대한 판단)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달수준 확인)
	D2.1 정기 CP 교육	D2.1.3 CP 교육 계획 수립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제38조 (교육의 실시)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달수준 확인)
제39조 (특별 교육 및 집중교육)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D2.2.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제40조 (교육평가)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D2.2.3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예: 시험, 인터뷰 등)
	D2.4 CP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D2.4.1 CP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지표(예: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건수, 학습성과의 달성 정도 등)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성이 평가되고 있는가?
제41조 (교육훈련 상별)	O2.2 인센티브 시스템	O2.2.1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제42조 (교육훈련 기록관리)	D2.1 정기 CP 교육	D2.1.4 조직이 수립한 CP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교육완료 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기록 포함)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D2.2.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제43조 (법위반 행위의 감시)	D1.2 활용 편의성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정기 감사)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제44조 (경쟁법 및 관련법령 위험성(Risk) 평가)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제45조 (고유 Risk의 식별)		
제46조 (고유 Risk 분석 및 원인 파악)		
제47조 (고유 Risk 판정)		

CP 운영 규정	CP 등급평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제48조 (Risk 관리)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제49조 (경감 또는 완화)		
제50조 (Risk 이전 또는 분산)		
제51조 (Risk 회피)		
제52조 (Risk 허용도)		
제53조 (통제수단의 효과성 평가)		
제54조 (잔여 Risk 판정 및 관리)		
제55조 (사전업무 협의)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O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O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제56조 (직접보고체계)	O1.3 직접 보고체계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위반 행위 발견 시 최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제57조 (내부제보)	O1.4 내부고발 시스템	O1.4.1 임직원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제58조 (내부제보 절차)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제59조 (내부제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원보호)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보복 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제60조 (내부제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O1.4 내부고발 시스템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O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이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 되도록 정하고 있는가?(예: 이사회 보고 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제61조 (효과성 평가)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정기 감사)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행 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CP 운영 규정	CP 등급평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제62조 (효과성 평가 대상 및 고려사항)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정기 감사)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안됨)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제63조 (효과성 평가 방법 등)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제64조 (모니터링, 성과측정, 분석 및 평가)		
제65조 (모니터링, 성과측정, 분석 및 평가의 책임과 권한)		
제66조 (모니터링, 성과측정, 분석 및 평가 절차)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정기 감사)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제67조 (경영검토)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제68조 (경영검토 내용)		
제69조 (경영검토 의사결정)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제70조 (경영검토 기록의 활용 및 관리)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 되었는가
제71조 (포상 등)	O2.2 인센티브 시스템	O2.2.1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제72조 (제재 조치)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1.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가?
제73조 (제재의 절차)		O2.1.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
제74조 (문서관리 기본원칙)	일반사항	공통
제75조 (관리대상 문서)		

CP 운영 규정	CP 등급평가	
	평가지표	세부측정지표
제76조 (운영상황 공시)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 없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제77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일반사항	공통
제78조 (관련 규정의 준용 및 위임)		